

의안번호	제2897호
의 결	. . .
연 월 일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이쌍자 의원 등 8인
발의연월일	2025. 2. 18.

고성군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쌍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97
----------	------

발의연월일 : 2025. 2. 18.

발 의 자 : 이쌍자, 허옥희, 김희태,
이정숙, 최두임, 김향숙,
김원순, 김석한 의원(8인)

1. 제안이유

고성군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적 공헌을 후세에 전하고 독립운동의 중요성과 애국정신을 확산시켜 지역 사회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선양사업의 지원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나.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2호
 - 예고기간: 2025. 2. 18.(화) ~ 2025. 2. 24.(월)[6일간]
 - 예고결과: 의견 없음

4. 본문: 불임과 갯음

고성군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적 공헌을 후세에 전하고, 독립운동의 중요성과 애국정신을 확산시켜, 지역 사회의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3. “선양사업”이란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그 가치를 후세에 전파하기 위한 각종 기념, 교육, 홍보, 문화 활동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고성군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 및 고성군 출신 독립유공자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지역 독립운동 업적을 널리 알리고, 그들의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선양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성 지역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기념 행사 및 문화 활동 지원
2. 독립운동 관련 전시, 강연, 학술행사 등의 기념 행사 개최
3. 독립운동과 관련된 문화 콘텐츠 제작 및 보급
4. 독립운동 업적을 알리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 활동 지원
5. 독립운동 관련 자료 발굴, 재조명 및 업적의 연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제5조의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발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 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